

제1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제2차본회의, 2006. 11. 17(金)

조례안 심사보고서

거 창 군 의 회
(산업건설위원회)

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6년 11월 8일
- 제출자 : 거창군수(도시건축과)
-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9일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6년 11월 14일(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- 의안번호 : 제2006 - 59호

2. 제안설명 요지

- 제안이유
 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('06.6.23)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, 옥외광고업의 휴·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
 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및 제8항 (옥외광고업 등록필증 재교부) 규정으로 해당조례 삭제 (제29조)
 -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 수정 (제32조)
 - 옥외광고업의 휴·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(제3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'06. 6. 23 『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』의 일부 개정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이 강화되고, 옥외광고업의 휴·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조례에 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
-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,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에 대한 조항이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-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『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』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고 경상남도에서 통보된 『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』 표준개정안에 근거하여 우리군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
-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와 11월 8일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,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**원안가결**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